#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2093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'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'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'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'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노인복지법」의 개정)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1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
- 제2조(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의 개정)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- 3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

는 사람

제3조(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호 중 "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으로, "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"을 "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제4조(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)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제4호 중 "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으로, "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"를 "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제5조(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
- 제6조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"을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"을 "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

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4. 제3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"를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" 를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	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
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ਜੈ)
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	
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	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
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	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
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	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	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
<u>사람</u>	아니한 사람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	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
	중에 있는 사람
5. ·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
####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	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	
없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	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
받고,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	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
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	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	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
	<u>라</u>
<u>&lt;신 설&gt;</u>	3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	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
	중에 있는 사람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###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6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	
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이나 「형법」 제234조	4
·제317조제1항, 「의료법」,	
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	
급여법」, 「보건범죄단속에	「보건범죄 단속에
<u>관한 특별조치법」</u> , 「마약류	관한 특별조치법
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	
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	
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	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
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	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
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	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
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	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
<u>니한 사람</u>	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
	사람
<u> &lt;신 설&gt;</u>	5.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
	<u>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</u>
	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
	<u>람</u>

##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응시자격 제한 등) ①다음	제74조(응시자격 제한 등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	
응시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이나 「형법」 제234조	4
·제317조제1항, 「의료법」,	
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	
급여법」, 「보건범죄단속에	「보건범죄 단속에
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마약류	<u>관한 특별조치법」</u>
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	
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	
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	<u>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</u>
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	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
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	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
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	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
<u>니한 자</u>	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
	<u>사람</u>
<u>&lt;신 설&gt;</u>	5.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
	<u>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</u>
	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
	<u>람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#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	제29조(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
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del>ரி</del> )
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	
이 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	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
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	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
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	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
<u>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</u>	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
<u>람</u>	<u>니한 사람</u>
<u> &lt;신 설&gt;</u>	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	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
	중에 있는 사람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
#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	제18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
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사유)
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	
문요원이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	2
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	
여 금고 이상의 <u>형을 선고받</u>	<u>실형을 선고</u>
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	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
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	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확정되지 아니한 사람	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
	지 아니한 사람
가. ~ 거. (생 략)	가. ~ 거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2</u> 의2.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
	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
	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
	기간 중에 있는 사람
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	3
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	
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	
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	

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 -----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 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영 등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|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 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 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. <후단 신설>

1. • 2. (생략)

----- 실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
4. 제3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람

제19조(정신의료기관의 개설・운 제19조(정신의료기관의 개설・운 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.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- ③ ~ ⑦ (생 략)
- 제22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・운 제22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・운 영)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-----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 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을 설치할 수 없다. <후단 신 설>

- 1. 2. (생 략)
- ④ ~ ⑦ (생 략)
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  - 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. 그 사람 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 에도 또한 같다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